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2. 16 선고 2021가단10809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다울

담당변호사 이호철

변 론 종 결 2021. 12. 2.

판 결 선 고 2021. 12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. 7. 5. 체결된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을 금 4,231,8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피고는 원고에게 4,231,866원 및 그 중 2,397,475원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로서 ‘금 3,999,127원 및 그 중 2,397,475원에 대하여 2021. 1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’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. 그런데, 위 C은 2018. 7. 5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,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, 이로 인하여 위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, 다만 그에 대한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살피건대,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(원고는 2021. 9. 27.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, 이후 피고의 소취하 부동의로 인하여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았다)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태환

별 지 목 록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부산광역시 사하구 외 1필지 아파트 동 제
 18층 호
 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18층 호
 철근콘크리트조 78.11m²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부산광역시 사하구
 2. 부산광역시 사하구

대지권의 종류 : 1, 2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1072770000분의 349000

